

지리멸렬 아청법 논란, 이젠 끝내야 할 때

서찬휘 (만화 칼럼니스트)

아청법 이슈의 전개 과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 윤석용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후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지정하는 제2조 제5호의 위헌성 및 과잉 단속, 과잉 처벌 논란에 휩싸인 지 이제 만 2년을 넘겼다¹⁾. 이 윤석용 판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손쉽게 많은 수의 ‘준 강간 강력범죄자’를 공권력으로 단속해낼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 이용되며 발효를 전후해 근 40배에 달하는 단속 건수 폭증을 기록²⁾했다.

실제 아동이 출연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이는 바로는 연령대를 가늠할 수 없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의 창작 표현물의 표현을 단속권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아동에게 실제 성적 피해를 입히는 아동 포르노와 동급으로 취급함으로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밖에 없는 법 적용의 위헌적 오류를 다시금 재개정을 통해 고치기 위해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세 차례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³⁾, 문제 해결을 위해 몽친 시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대중 강연⁴⁾을 이어갔다.

여기에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위한 만화 탄원서⁵⁾가 제작되

- 1) 윤석용 의원이 2011년 9월 15일 발의해 이듬해인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아청법 개정안은 제2조 제5호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제 조건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로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문제의 싹을 틔웠다.
-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아청법 관련해 전국 검찰청 접수 사건 수는 119건. 반면 윤석용 안이 발의된 2012년 3월 16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전국 검찰청 접수 사건 수는 4,412건으로 37배나 폭증했다.
- 3) 아청법과 관련한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주최로 모두 세 차례 열렸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동음란물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2012.11.12), 「표현의 자유와 만화산업 발전」(2012.12.7), 「아청법 2조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2013.8.12.)
- 4) 사단법인 오픈넷과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아청법대책회의에서는 제17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행사 기간(2013.7.23~28, 서울명동)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에 걸쳐 서명운동과 리플릿 배포, 강연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외에 만화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청법 이슈 강연(2013.6.5,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대전 만화 콘텐츠 페스티벌 DICU(2013.7.27~28, 대전컨벤션센터)에서의 아청법에 관한 간담회 등도 이어졌다.
- 5) 「바이블 블랙」이라는 일본산 게임 원작 예로 애니메이션의 불법 공유자가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해 제작하는 음란물

기도 했고,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연거푸 넣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으며⁶⁾ 6개 만화계 단체가 한 데 모인 한국만화연합이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을 국회가 2013년 회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⁷⁾하기도 했다.

아청법 논란의 핵심은 ‘법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법이 일으킨 결과’

이처럼 격렬한 논쟁과 문제제기가 연이어 일어나자 집권층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은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제2조 제5호에 ‘명백하게’를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⁸⁾시켰지만 위헌 논란의 핵심이었던 법안의 모호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불씨를 고스란히 살려두고 말았다. 이 김희정 개정안의 발효를 전후해 아청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판사가 법 조항의 모호성과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거푸 두 건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진기록도 남겼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단속 결과로 쌓인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들도 아청법으로 처벌하기가 무리인 것을 감안해 다른 법으로 기소 이유를 변경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범죄자를 잡기 위한 기준이 올바르게 못해 줄지에 범죄자를 잘못 제조하고 있을 뿐임을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골고루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아청법은 법 이름이 담고 있는 지당한 목적, 즉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행정력 공권력 단속력 인력 낭비라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 법과 관련하여 많은 오해와 대립이 있지만, 논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프로·아마추어 만화가들을 중심으로 만화 탄원서를 제작해 보냈다(2013.7).

- 6)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문홍주 판사가 각기 2013년 5월 27일과 2013년 8월 12일에 아청법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연이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히 만화인들의 탄원서가 문홍주 판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에 역할을 했다.
- 7) 제13회 만화의 날(2013.11.3)에 발표.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2조 제5호의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을 ‘명백하게 실존하는’으로 바꿈.
- 8)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표현물’을 없애는 취지로 직접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2013년 2월 26일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해 2013년 6월 19일부터 발효. 제2조 제5호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바꾸었다.

애초에 법이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끔 잘 설계되어 적용되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성 범죄자에 관한 공분 여론에 편승한 끝⁹⁾에 적용 효과에 관한 아무런 고찰과 적용 대상에 관한 공부 하나 없이 법으로 제조하여 통과시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가 이 거대하고도 현실성 없는 국가적 낭비다.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낭비와 피해자들의 고통 호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고쳐 보겠다고 오랜 시간 애를 쓰고 있음에도, 이 논란이 여전히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까닭은 왜일까. 정치 세력의 대결 구도? 국회의 공전? 물론 문제가 크지만, 이 사회가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인 이상 방향이 각기 다른 정치 세력의 강한 충돌과 그에 따른 잡음은 노동자의 파업권만큼이나 용납되어야 할 사회적 비용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법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문제의 중심에 접근하지 못했거나 또는 않았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경찰을 비롯해 단속을 맡은 쪽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반응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송치 받는 검찰 또한 기소 이유 변경이라는 결정을 연거푸 내리며 ‘이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비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이것이 그저 명분 싸움의 대상이나 인터넷 키보드 배틀의 주제가 아니라 ‘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이다

법이란 뭔가를 알기 위해 꼭 법률가여야 할 이유 따윈 없다. 당장 사전에서 찾아보자.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자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¹⁰⁾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나온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이 바로 국가의 강제력이다. 강제력이라는 건 다시 말해 국가가 의무와 규칙을 따르지 않은 상대로 하여금 그 의무와 규칙을 강제로 따르게끔 할 수 있는 힘이다. 맘에 안 들면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안 하면 갇히거나 돈을 내야 하는 등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강제적인 조항들이라는 말이다. 아동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를 명목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을뿐더러 그 피해 성립 조건을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창작 표현 콘텐츠 일체(법률에 따르면 ‘표현물’로 일컬어

9) 윤석용 의원이 주도한 재개정안은 속칭 「도가니」 사건과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여론의 분노를 등에 업고 급하게 제조된 측면이 크다.

10) 국립국어원 해설 발췌.

지는 그것)의 제작과 유통 그 자체까지를 강간범과 아동 포르노 제작의 범주와 동일시하는 오관을 법이라는 국가적 강제력을 동원해 저질렀다는 데에 있다.

이 ‘오관’이 단지 키보드 배틀이나 저잣거리 논란의 범주에서 멈출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만, 아청법은 실제 성 범죄자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의 성에 위해를 끼친다고 자의적 기준을 통해 판단된 대상을 ‘처벌’하기 위해 제작된 ‘법’이다. 그 처벌은 돈을 내느냐 감옥에 가느냐로 갈리며, 당연히 범법 용의자를 범법자로 확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그 과정에 지난한 시간과 다툼이 필요하다. 기준이 모호하니 용의자는 많은데 법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법적 판단은 느려지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고, 무죄거나 음란물 불법복제와 배포 정도로 처벌받으면 그만이었을 사람¹¹⁾이 자신이 무기징역 또는 최저 5년 이상의 징역¹²⁾을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일상을 접어두고 싸워야 한다. 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심지어 이 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 어느 누구도 진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관한 처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어느 누구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제조’될 수 있다는 큰 문제를 언급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이제 이 문제로 걸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빠지고 있어 실효성까지 의심되는 지점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 법의 존재 이유는 법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희박해질 대로 희박해진 셈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법을 두고 법 이름에 적혀 있는 목적만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발상이 얼마나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지는 지난 2013년 8월 12일에 최민희 의원 주관으로 열렸던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던 현행 아청법 찬성(재개정 반대) 측 패널로 나온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가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에 답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당시 이현숙 대표는 아청법으로 기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 것이며, 설령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해도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이 논란이 범죄자 처벌을 위한 법률과 얽힌 사안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이것이 비단 이현숙 대표의 인식선이기만 할까? ‘목적’이 옳기 때문에 ‘수단’은 어찌 되든 상관없고 다뤄보면 유죄까진 안 갈 거라는 말은 법이란 게 대체 일개 시민의 삶에 어떤 역할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호에 따라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상한선을 지정하고 있으며 음란성 판단에서 다툼 여지가 많고 이를 배포했다 하여 성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청법과 다른 점이다.

12) 각주 11)에서 말했듯 음란물 배포에 따른 처벌 수위는 상한선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가 받게 되는 ‘5년 이상 징역’이란 처벌 수위는 말 그대로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선 지정 방식이다.

을 하는지에 관해 아무런 고민이 없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그리고 기실, 제아무리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적’ 자체가 맞다 손 치더라도 ‘수단’이 이미 국가적 낭비로 결론이 나서 더 이상의 낭비를 막기 위해선 “큰 틀에선 동감하나 범위만큼은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엔 정과나 성별¹³⁾을 떠나 위헌 소지가 없게끔 고쳐냈어야 했다. 입법부인 국회는 이 부분에서 표를 의식해선지 결국 ‘명백하게’를 삽입하는 선의 어정쩡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사안이 법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한 판단을 저만치 미뤄놓았으며, 이 애먼 개정안으로 말미암아 추가 개정 시도에 입법부 구성원의 피로가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물론 김희정 의원의 노력과 선의 자체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옳은 목적을 지키기 위해 수단이 일으킨 낭비, 더 드러내 놓고 말해 불특정 다수 가운데 어느 누군가를 영겁결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만들기 쉬운 국가 폭력 앞에 그 목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청법을 두고 아직까지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반드시 모든 내용이 지켜져야 하며 이를 반대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옹호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솔한 토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말은 다 나온 지금에 이르러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만, 그럼에도 이 말은 덧붙일 수 있을 듯하다. 현행 아청법에 반대함은 법의 목적에 반대함이 아니요, 그릇된 수단과 그에 따라 발생한 재난에 가까운 결과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목적과 수단이 조화를 이루는 법을 만들라는 주장이다. 이 전체를 빼놓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이 거대한 국가적 낭비를 긍정하는 행위로, 아청법이 얼마나 허약한 지지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입증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과 수단이 조화를 이루는 아청법의 탄생을 위하여

바야흐로 규제 중독 시대다. 아청법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2년 사이에 문화콘텐츠 업계와 창작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끝없이 퇴행을 거듭했다. 게임 중독법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법률은 미디어 전반에 걸친 검열의 칼날을 세우려 들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들은 심지어 사전검열을 획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¹⁴⁾. 「어느 아나

13) 2012년 11월 12일 열린 최민희 의원의 첫 번째 아청법 개정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바 있는 고 성재기 씨는 남성연대라는 단체를 통하여 현행 아청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방향을 오로지 남녀 성대결로 끌고 가 논지를 흐림으로써 아청법과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키스트의 고백」처럼 만화 작품에서 무엇을 왜 표현했는가와는 상관없이 기계적인 판단으로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아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고 판정을 취소한 사례도 나왔다. 심지어 SNS상에서 “현행 정보법(청소년보호법)과 아청법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망치려는 중북들의 음모”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이 법은 명백하게 ‘어느 이해관계 속 여론전’의 한 중심에 서 있다.

아직은 대중 여론과 업계 관계자들의 학습효과가 힘을 내고 있지만, 정보법이 그러하였고 아청법이 또 그러하였듯 규제법, 그 가운데 대중문화를 규제하는 법이란 그 문장에 오류가 있는 한 빌미를 잡아 어느 목적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에 요긴하게 쓰이게 마련이다. 이것이 목적만 옳고 수단이 잘못된 법이 일으킨 결과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귀찮은지는 많은 이들이 몸으로 시간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현행 아청법에 반대하고 개정하자는 주장은 이로 말미암은 낭비를 없애므로써 법이 제 역할을 하게끔 하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이상 목적만으로 부화뇌동함으로써 지리멸렬한 논의를 이어가려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 또한 사회적 비용이라 하기에는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지나치게 아깝다. 심지어 국회의원과 달리 대중들은 법을 만들거나 논하는 것이 직업도 아니지 않는가? 문화콘텐츠 업계 및 수요층이 아청법으로 골치를 썩는 도중에 다른 규제법들까지 대중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세우고 있어 이미 이 사안이 아청법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이 문제를 합리적인 형태로 마무리 짓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현재 상황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3회 토론 당시 발표한 발제의 한 소제목을 인용하자면 바로 그것만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보호하고, 적용해야 할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지리멸렬한 논란은 이제 끝내자. “어느 누구도 목적에 반대하지 않고” 다만 “수단과 그에 따른 결과가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방향은 명백하다.

14) TV조선이 2013년 10월 23일 방송한 「변태성행위까지 적나라한 성인만화...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이란 기사에서는 현행 자율 등급 책정 뒤 사후심의 절차로 그나마 균형을 잡고 있는 심의 체계를 문제 삼는데 이어 “사전심의를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라는 간행물윤리위원회 담당자의 말에 대고 “이게 허점”이라며 사전심의를 획책하고 있다. 사전심의를 곧 국가 기관의 사전 검열을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와 박정희 독재 시대의 유물이다. 이에 질세라 매일경제는 2013년 11월 13일자 기사 「19금 웹툰 인기인데...심의를 `자율`」를 통해 웹툰 자율 심의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자율심의를 2012년 초 몰아닥쳤던 웹툰 심의 사태와 만화가들의 강경 투쟁 끝에 만화계가 얻어낸 성과로, 1년 만에 정면으로 문제 삼는 기사가 등장한 셈이다. 출판만화와 웹툰의 심의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 삼는 대상이 다르기는 하나 조선일보와 매일경제가 “독재회귀, 사전심의 부활”이라는 요구를 했다는 점에선 똑같다.